

제주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5887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7. 2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638,8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2,638,8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주시, 서귀포시, D,

기업은행에 대한 각 과세정보 및 금융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경 C의 E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C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9. 8. 22. E은행에게 C의 채무 12,576,794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가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는 원고에게 12,638,810원 및 그 중 12,576,794원에 대하여 2019. 9. 2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8.0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C는 자신의 유일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2. 1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2019. 3. 8.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준 사실, C는 피고의 큰어머니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12,638,8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12,538,8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장욱

